

서울고등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2056730(본소), 2019나2056747(반소) 판결
[구상금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9. 9 선고 2019나2056730(본소), 2019나2056747(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514892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김재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근재, 김동훈

변론 종결2020. 6. 24.

판결 선고2020. 9. 9.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514892(본소),
2019가합567121(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305,381,314원, 피고(반소원고)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는 23,451,12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19. 6.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90,000,000원, 피고 C에게 2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반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 회사가 본소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권리남용 항변, 피고들이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이 사건 보증금 등 반환 약정 및 이 사건 공과금 등 반환 약정에 대한 실효·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따른 무효·착오 또는 기만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항변 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본소와 반소에 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장석조

판사박성준

판사한기수